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강동 헤리티지 자이' 주택청약 업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진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관련기관 및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및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 홈페이지(<https://xi.co.kr/KD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수 있고 당사 홈페이지 내 VR, 안내동영상,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44-9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3층 / 8개동 / 총 1,299세대 중 일반분양 219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2022년 12월 9일(금) 예정]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6월(정확한 입주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 특별공급 주택형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59.9800B	59B	59.9800	22.1090	82.0890	46.8980	128.9870	219	21
합계								219	21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세대수 배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분양승인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입주예정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하실 주택형을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구분	59B 배정세대수	
	확정	예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서울지방보훈청)	(20)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지방보훈청)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25)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30)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15)
	장애인 (경기도청)	(5)
	장애인 (인천광역시청)	(5)
합계	21	(105)

- ※ 배정세대에 대한 확정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를 표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예비추천자)를 선정하며, 당 사업지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500% 적용하였습니다.
- ※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고, 예비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시(변경 가능)	비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2년 12월 14일(수) 13시까지	* 담당자 협조 공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12월 09일(금)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https://xi.co.kr/KDS)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오픈	2022년 12월 09일(금)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 (강동 헤리티지 자이 건본주택)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년 12월 19일(월) [09:00~17:30]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신청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자격인증 서류 지참 필수) * 건본주택 신청 시 (10:00 ~ 14:0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2년 12월 29일(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접수	2023년 01월 03일(화) ~07일(토), 5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 (강동 헤리티지 자이 건본주택) * 일정 및 시간은 분양 홈페이지(https://xi.co.kr/KDS) 참고
계약 체결	2023년 01월 10일(화) ~12일(목), 3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 (강동 헤리티지 자이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 등록(미등록 시 청약 불가)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으로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네이버인증서 포함)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2.09.예정) 현재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추천기관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특별공급 1회 제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불필요	적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필요	적용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불필요	적용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불필요	적용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불필요	적용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필요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필요	적용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2년 12월 09일(금)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기타 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결과 상기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인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첨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V 당첨자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 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V 유의사항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전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지역별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경쟁시 탈락할 수 있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추천자는 주택형별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당첨자로 선정 또는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통합 예비당첨자로 선정 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 부여는 추첨 방식입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 안내될 계획입니다.
- 상기 배정 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추천인의 경우 각 타입별 500%(소수점 이하 올림)의 비율로 배정되었으며, 각 기관별 예비추천인 배정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기간, 공급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최종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1544-9918 / 전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원
 홈페이지 : <https://xi.co.kr/KDS>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본공사 부지내 건본주택 건립)